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2월
석사학위논문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법인세법상 자산평가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성 경 선

국제회계기준도입이 법인세법상 자산평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doption of K-IFRS on th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in the Corporate Taxation

2011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성 경 선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법인세법상 자산평가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기평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성 경 선

성경선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조 승 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승 용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기 평 인

2010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v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3
제2장 선행연구	4
제1절 국내 연구	4
제2절 국외 연구	10
제3장 무형자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13
제1절 무형자산의 인식	13
제2절 무형자산의 분류	19
제3절 무형자산의 가치측정	26
제4장 K-IFRS 도입과 무형자산의 평가	31
제1절 무형자산에 대한 K-IFRS 규정	31
제2절 국제이전가격과세제도	42
제3절 K-IFRS 도입에 따른 개편방안	51

제5장 결론.....	54
<참고문헌>.....	56

표목차

[표 1] K-IFRS 도입시 비계약적 고객관계규정 세무조정	36
[표 2]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무형자산 내용연수	36
[표 3] K-IFRS 무형자산 자산재평가과 관련 규정	37
[표 4] K-IFRS 무형자산 손상차손 규정	38
[표 5] K-IFRS 사업결합 등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규정	39

Abstract

The Effect of Adoption of K-IFRS on th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in the Corporate Taxation

By Seong Kyung-Seon

Advisor : Prof. Kim Ki-Pyung,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differences arising in intangible asset valuation between existing accounting standards and IFRS in business combinations, its implications, and problems from applying it in practice. Furthermore, we analyze the influence on the volatility of income in recognition and subsequent valuation in order to provide policy makers and information users informative guidelines regarding these matters.

Intangible assets are rights and privileges that are long-lived, are not held for resale, have no physical substance, and usually provide their owner with

competitive advantages over other firms. The importance of intangible assets can be illustrated by considering many corporation cases.

As with many accounting issues, accounting for intangibles involves a trade-off between relevance and reliability. Information concerning intangible assets is relevant, but to meet the standard for recognition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recorded amount for the intangible must also be reliable.

The trends on intangible asset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tangible assets management research puts through individual knowledge to organizational knowledge. And intangible assets research fulfills intangible assets management from the views of information technology.

Secondly, research on the measurement and disclosure of intangible assets has been conducted more actively in Korea than overseas. Especially, Korea Accounting Institute published research repor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o come up with a desirable method to measure and by subsequently developing a framework to formulate a reasonable and systematic disclosure policy for intangible assets.

Many companies attempt to measure the worth of their patents and brands, even if such numbers are rarely publicized. However, intangible assets due to its uniqueness, often has no comparable transaction in most cases,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calculate the transfer price for intangible assets using the traditional method of arm's length calculation which assumes the existence of a comparable transaction. Thus,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assets are not taken into consid

eration at all. In this regard, it is unreasonable to apply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transfer price for tangible assets to intangible assets. As such, a transfer pricing system for intangible assets should be legislated.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한국회계기준원은 2009년부터는 희망 기업에 한해 K-IFRS를 적용할 수 있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기업이 K-IFRS를 적용하도록 발표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1년부터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은 연결재무제표 공시를 해야하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2013년 까지 연결재무제표 공시를 해야한다.

특히 2011년부터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은 기업의 자산평가에 있어서 법인의 재량 범위를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는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자산 평가규정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 법인세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산 중에서 특히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이 최근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유형자산에 비해 무형자산으로부터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현대와 같이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무형자산은 토지와 노동, 자본이라는 전통적인 생산요소를 대체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바뀜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훈련, 상표 등 브랜드에 대한 관리, 조직 문화의 형성 등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과 판매,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비교하여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에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

나 물리적 형태의 유무와 미래효익에 관한 불확실성의 정도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구분하는 절대기준이 될 수는 없다. 무형자산의 미래효익에 관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로는 무형자산의 대부분이 특정기업에 대해서만 가치가 있고, 내용연수를 결정하기 어려우며, 그 가치가 상대적 경쟁력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가치의 변동이 심하기 때문인 것 등을 들 수 있다.

무형자산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인식 및 측정에 있어서 자산의 과대평가 가능성을 이유로 제한적인 인식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자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자산의 정의에 따라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특정실체에 의한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미래경제적 효익(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형자산가치 창출을 위해서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와 더불어 지식재산 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른 자산평가 규정 중에서도 무형자산 평가에 대한 현행 법인세법 규정과 K-IFRS 규정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법인세법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를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논문들과 문헌, 각종 연구보고서 및 현행 법인세법 규정 및 K-IFRS 규정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외에 국제회계기준, 미국회계기준과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미국 내국세입법,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규정 등을 참고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연구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기여도를 서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법인세법상 무형자산 평가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 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의 가치측정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 평가에 대한 현행 법인세법 규정과 K-IFRS 규정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법인세법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 선행연구

제1절 국내 연구

무형자산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용진과 김은혜의 연구에서는 사업결합 과정에서의 무형자산 평가와 관련한 K-IFRS와 기존의 기업 회계기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K-IFRS의 의미와 시사점, 실무상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한, 무형자산의 인식 및 가치평가가 향후 이익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K-IFRS가 아직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제 자료를 통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K-IFRS의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고 시나리오 별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K-IFRS가 이익의 변동성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¹⁾

서지성의 연구에서는 회계기준으로 인해 무형자산 투자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근거로 무형자산회계처리에 따른 기업가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를 회계처리 함에 있어 비용화하는 것이 자산화하는 것보다 이익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각각에 따른 이익과 주식 수익률간의 관계를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상장기업 2,515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개발비와 광고선전비를 모두 비용화한

1) 오용진 · 김은혜, “IFRS도입에 따른 사업결합과정의 무형자산 평가 사례를 통한 이익 변동성 검토 - 국내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32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이익보다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이익, 그리고 광고선전비를 자산화한 이익이 주식수익률과의 관련성이 높았으며 모형의 적합도 역시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산화하고 그 이외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선택적 자본화법에 따른 이익이 연구개발비 전체를 자산화하는 방법에 비하여 충분내용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선택적 자본화법에 따른 이익은 전체를 자산화한 이익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모형적합도를 보였다.²⁾

성용현과 조경선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지식재산 투자와 관리 역량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기업가치와 무형자산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 지식재산 투자와 관리 역량과 연관된 주요 변수들이 무형자산가치 범주를 구분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지식재산 관리 실태조사 결과 특허관리 역량은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관리 및 브랜드 관리 역량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무형자산가치 범주간 지식재산 투자와 관리 변수의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 로짓 판별분석 결과 연구개발비 비율과 특허관리 역량이 무형자산 가치 범주를 판별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³⁾

그리고 채정병의 연구에서는 무형자산 거래와 관련된 OECD와 미국의 국제 이전가격세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⁴⁾

그리고 박성섭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무형자산인 지식경영도입전략 유형과 지

2) 서지성, “무형자산성 지출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른 기업가치관련성”, 국제회계연구 제24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3) 성용현 · 조경선, “지식재산 투자와 관리가 기업의 무형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4) 채정병, “무형자산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식자산의 수준 및 경영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경쟁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활동에서 지식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지식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⁵⁾ 지식경영 도입전략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보기술의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조직과 정보기술의 경험정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식자산의 활용정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객자산, 구조적 자산 및 인적 자산의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경영 도입전략유형에 따른 지식자산의 수준과 경영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조직중심전략을 도입하는 기업에서 인적자산의 활용정도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높아지며, 정보기술 중심전략 또는 학습조직과 정보기술의 결합전략을 도입하는 기업에서 고객자산의 활용정도가 높아질수록 경영성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진창의 연구에서는 조직지식이라는 무형자산으로 확대한 학습조직의 관점으로 보는 연구 방향으로 학습조직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 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조직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식경영은 보면 결국은 조직구성원인 개개인의 지식을 조직지식으로 확대하는 학습조직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⁶⁾

또한 우성진의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인 지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식경영에 대한 개념들이 소개되면서 전략측면에서도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기업이 조직되는 현상을 지식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5) 박성섭, “지식경영의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p.45.

6) 이진창, “국내산업별 지식경영 전략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제3회 지식경영학술 심포지움, 1999, pp.485-488.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식과 경쟁우위의 전략적 연계성 및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경쟁전략의 근원을 핵심지식의 관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활동이 전략과 연계될 경우 그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상당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경영 프로젝트도 전사적 또는 사업전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경우 최고경영층의 지원과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⁷⁾

그리고 최정호의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인 연구개발비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며, 기술개발속도가 빠른 환경에서 연구개발비지출은 성과향상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활동으로 지출된 금액이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연구개발지출액과 기업의 시장가치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체로 기업의 이익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시장가치와도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⁸⁾

또한 신일순 등의 연구에서는 무형자산 투자의 일환으로서 정보기술투자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를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⁹⁾

조호석은 무형자산에 대한 중요성에 부응하여 기업이 지식이라는 새로운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각 분야의 연구문헌과 사례를 토

7) 우성진, “지식경영의 핵심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p24-27.

8) 최정호, “광고비 및 연구개발비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토빈 q에 의한 실증적 분석”, 회계학연구, 한국회계학회, 1994, pp.103-122.

9) 신일순 · 김홍균 · 송재경, “정보기술 이용과 기업성과”, 경제학연구 제46집 제3호, 1998.

대로 지식자산의 측정 및 보고방안을 제시하고 회계법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¹⁰⁾

그리고 정재일은 무형자산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재무제표 제공자와 이용자들의 지식자산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후,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식자산의 측정과 공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식자산의 측정 및 공시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은 산업특성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지식자산의 측정은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식자산에 대한 회계정보를 충분히 공시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기존 재무제표와는 별도로 지식자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식경영에 대한 관심과 활동수준이 지식자산의 측정과 공시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는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경영에 대한 활동수준이 높으면 측정에 대한 필요성은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시와의 관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¹¹⁾

홍정화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도래에 따라 중요한 생산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지적자산은 전통적 재무제표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중시하여 기업가치 창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식자산에 대한 회계적 측정과 공시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였다.¹²⁾

그리고 오준환은 보이지 않는 또는 기록되지 않은 자산이라는 지식자산의 개념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식자산을 측정·평가하였는데, 시장변수(주가)와 재무

10) 조호석, “지식자산의 가치측정과 보고”,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1) 정재일, “지식자산의 측정·공시에 대한 집단특성별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2) 홍정화, “지식자산의 측정과 보고에 관한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3권 제2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3.

변수(장부가치, 순이익)를 활용한 초과이익모형, 비용자본화모형, 내재가치모형 등으로 지식자산가치를 측정하고 각 측정방법의 적정성을 변수간 동시 및 선도 모형과 전통적 재무변수모형에서 평가하였다.¹³⁾

13) 오준환, “성과선도모형을 이용한 지식자산가치의 측정 및 평가” 회계학연구 제28권 제3호, 2003, pp.1-29.

제2절 국외 연구

무형자산과 관련된 국외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O'Leary¹⁴⁾ 및 Davenport¹⁵⁾ 등의 연구에서는 정보기술 활용을 통한 조직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의 확보 방안 및 관련 주제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지식경영 메커니즘이 제안이나 구현 없이 기존의 그룹웨어나 인트라넷, 또는 전자우편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지식을 공유한다는 방안을 논하였다. 이들의 연구들은 인공지능기법이나 그 밖의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지식의 획득, 축적, 전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학습조직 또는 조직기억을 유도해 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적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¹⁶⁾

그리고 Grant의 연구에서는 조직을 무형자산인 지식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기업경영의 주요과업이 현존하는 자원과 역량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기업의 자원기반을 개발하는 특이한 자원과 역량의 모음으로 설명하는 자원기반관점(resource-based view)의 일환으로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있다.¹⁷⁾

14) D. E. O'Leary, "Enterprise Knowledge Management", IEEE Computer, March, 1998, pp.54-61.

15) T. H. Davenport, "Improving Knowledge Work Process," Sloan Management Review, Summer, 1996, pp.53-65.

16) R. Ruggles, "The State of the Norton: Knowledge Management in Practic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0, Spring, 1998, pp.80-89.

17) R. M. Grant, "Toward a knowl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Review, Vol.17, 1996.

또한 Sanchez와 Mahoney는 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의 지식관리와 같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전략적 제휴를 지식의 이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조직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¹⁸⁾

그리고 Hansen 등은 건설링회사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식경영과 같은 무형자산의 전략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가지를 제시하였으며,¹⁹⁾ Porter는 정보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을 전략적으로 적용하면 조직의 구조가 경쟁우위의 확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²⁰⁾

그러나 Mason은 조직을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하나의 살아있는 학습조직이라는 무형자산 개념을 경쟁우위 확보방안으로 제안하였는데,²¹⁾ 이러한 학습조직의 개념은 이미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중반부터 몇몇 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었으며 그 후 여러 가지 유형의 초기 지식경영의 연구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Hall 및 Lev과 Sougjanis는 연구개발활동과 같은 무형자산에 지출된 금액이 기업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연구개발지출액과 기업의 시장가치와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대체로 기업의 이익과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시장가치와도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²²⁾

18) R. Sanchez and J. T. Mahoney, "Modularity, Flexibility and Knowledge Management in Product and Organization Desig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996, p.56.

19) M. Hansen, "What's Your Strategy for Managing Knowledge?", *Ha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99.

20) Porter, M. E., *Competitive Strategy*, N/Y: The Free Press, 1985.

21) Mason, R. M., "Effective Intelligent Organization: Knowledge is not Enough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Systems Planning", *HICSS 92*, 4., 1992.

22) S. Penman and T. Sougiannis, *A Comparison of Dividend, Cash Flow, and Earnings*

그리고 Peles는 광고비와 같은 무형자산이 산업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여 기업의 초과이익을 창출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²³⁾ 또한 Kallapur와 Kwan은 브랜드가치가 기업가치와 미래이익에 대한 설명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²⁴⁾

또한 Simon과 Sullivan은 무형자산을 브랜드가치, 브랜드화 되지 않은 가치, 기업전반요소 가치로 구분하고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계수를 이용하여 브랜드가치를 기업의 주가로부터 역산하여 추정하였다.²⁵⁾

Approaches to Equity Valu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998, pp.343-384.

23) Y. Peles, "Amortization of Advertising Expenditur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79, pp.128-137.

24) S. Kallapur and S. Kwan, "The Value Relevance or Brand Assets Recognized by UK Firms," *Working Paper*, January, 2000.

25) C. J. Simon and M. W. Sullivan, "The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Brand Equity: A Financial Approach," *Marketing Science*, Winter, 1993, pp.28-52.

제3장 무형자산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무형자산의 인식

무형자산은 법률, 회계, 세법 등 관련 목적에 적합하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무형자산에 대한 용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무형자산을 ‘물리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소유자에게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편익을 표상하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²⁶⁾ 이외에도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고 기업주에게 어떤 권리나 특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기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자산’으로 정의되기도 하나 보다 일반적으로는 ‘금전자산이나 유형자산 외에 기업에 존재하는 부차적 모든 요소’라고도 정의 된다.²⁷⁾

즉 무형자산은 회계학에서는 무형자산으로, 경제학에서는 지식자산(knowledge assets)으로, 경영학과 법학에서는 지적자산(intellectual assets)으로 사용된다.²⁸⁾ 또한 무형자산은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 지식자산(knowledge assets) 또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ies)과 서로 개념이 유사하여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과 지식자산(knowledge assets)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과 유사한 개념으로 주로 경제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ies)은 지식자산 중의 일부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권,

26) P. Fitch, Thomas, *Dictionary of Banking Terms*, 2nd ed., Barrons, 1993, p.314.

27) V. Smith, Gordon and L. Parr, Russell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 2ed ed., John Wiley & Sons, 1994. pp.83-84.

28) 김석웅·김정교·윤상봉 역, 「무형자산 관리, 측정, 보고」, 신영사, 2002, p.18.

프랜차이즈 등 법률적인 개념으로 주로 사용된다. 흔히 지식자산은 기업이 보유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비화폐성, 무형의 자원으로 정의되고 있다.²⁹⁾ 따라서 지식자산은 무형자산보다 광의의 자산개념이다. 지적자본은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지식관련 자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식자산과 같은 개념이다. 즉, 지적자본은 경제학적 용어이고, 지식자산은 회계학적 용어이다.³⁰⁾

또한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는 무형자산을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³¹⁾

또한 「국제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을 물리적 실체가 없이 생산,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자산, 화폐성 자산, 연구, 개발, 상각, 상각가능한 금액,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치, 공정가치, 실제시장, 감액손실, 장부가액 등 많은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다.³²⁾ 이처럼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가 다소 모호하지만 Skandia모형의 개발자인 Lief Edvinsson은 무형자산을 지식자본(knowledge capital), 비재무적 자산(nonfinancial assets), 비물질적 자산(immaterial assets), 숨은 자산(hidden assets), 보이지 않는

29) 한인구·장지인·나인철, “지식자산 개발활동의 측정과 공시, 한국회계연구원 연구 보고서 제5호, 2000, p.3.

30) 홍정화·유영경, “지식자산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세무와 회계저널 제5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4, p.98.

31)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5-가.

32)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38 Intangible Assets*, September, 1998.

자산(invisible assets), 목표성취를 위한 자산(means to achieve target) 등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³³⁾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1)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2)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아주 높아야하고, 또 (3)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존재할 경제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미래경제적 효익의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입수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³⁴⁾ 즉, 무형자산의 특징 때문에 모호한 증거에 근거하여 무형자산을 기록하여서는 안되며 보다 확실한 외부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산권,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은 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경제적 효익, 측정가능성 등을 충족시킨다고 보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무형자산은 근본적으로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과 같은 유형자산과 차이점이 있는데, 무형자산은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하락이나 자산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할수록 가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창출이나 취득을 위한 초기비용은 높으나 사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³⁵⁾

무형자산은 그 특징 때문에 인식 및 측정에 있어서 자산의 과대평가 가능성

33) Lief Edvinsson, *Intellectual capital: realizing your company's true value by finding its hidden roots*, Harper Collin Publisher, 1997.

34) 조성표, “무형자산 회계기준서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연구원, 2000, pp.8-12.

35) Thomas A. Stewart, *Intellectual Capital: The New Wealth of Organizations*, Doublebay, New York, 1997.

을 염두해 두고 비교적 까다로운 인식기준을 충족시켜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특히 자산의 정의에 따라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특정실체에 의한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미래경제적 효익(probable future economic benefit), 측정가능성(measurability)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무형자산의 정의 충족을 위해서 첫번째로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분리가능성(separability) 여부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면 그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과 함께 동일한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되는 다른 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희생하지 않고 그 자산을 임대, 매각, 교환 또는 분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제조설비를 제조공정에 대한 특허권과 함께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은 분리가능하지 않지만 식별가능한 것이다. 또한 어떤 자산이 다른 자산과 결합해야만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은 식별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 특정실체에 의한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을 들 수 있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특정실체가 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control by a particular entity)이다.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가능성이 통제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시장에 대한 지식 및 기술적 지식으로부터도 미래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이 저작권, 계약상의 제약 또는 기밀유지에 대한 종업원의 법적 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면, 기업은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숙련된 종업원이나 훈련을 통해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도 미래경제적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기업은 이와 같은 효익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숙련된 종업원이나 그들의 기술로부터 창출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은 기업이 충분히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특정인의 경영능력이나 기술적 재능도 기업이 그것을 사용하여 미래경제적 효익을 확보하는 것이 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리고 특정 자산이 무형자산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대상 자산이 본질적으로 비물리적인 속성을 지녀야 하고, (2)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하고, (3) 대상 자산에 대한 권리가 법적 또는 사실적 관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어야 하며, (4) 대상 자산은 평가목적상 확인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자산과 분리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³⁶⁾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서 기업가치를 형성시키고 있지만 회계장부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³⁷⁾

한편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내부창출 무형자산과 내부창출 영업권을 구분하고 있다. 내부창출무형자산으로서 자산화할 수 있는 것은 연구단계를 거친 후의 개발단계 지출에 대하여 식별가능성, 통제가능성, 미래경제적 효익, 측정가능성 등의 엄격한 조건을 적용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내부창출 영업권은 기업의 다양한 활동에 의하여 창출된 고정고객,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 등에 의한 초과수익능력을 의미하지만 자산 인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⁸⁾

현행 법인세법도 기업회계와 같이 자가창설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

36) Arthur Anderson,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16.

37) 홍정화, “지식자산의 측정과 보고에 관한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 저널 제3권 제2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3, p.35.

38)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34-38.

로 매입·합병·분할시 발생한 영업권만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본다.³⁹⁾

이처럼 기업회계상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된 지출로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이를 적정한 평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세무계산상 동 영업권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⁴⁰⁾

39)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40) 제도 46012-12076, 2001. 7. 12, 법인 46012-2599, 1999. 7. 8.

제2절 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의 분류기준은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무형자산은 크게 「기업회계기준서」⁴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과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권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⁴²⁾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은 다시 외부구입 무형자산과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여 외부로부터 구입한 무형자산(purchased intangibles)은 자산의 정의에 충족되기 때문에 취득원가주의에 의하여 자사으로 기록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되므로 특별한 회계처리가 필요 없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 인식 및 측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식별가능하다는 말은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종류의 예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작품 등의 개발),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등이 있다. 그러나 영업권은 독립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자산이다. 이외에도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에는 수리권, 각종 공익사업의 시설이용권 등이 있으며, 이들도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자산성이 있어야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법이나 계약에 의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권리가 부여된 경우에 해당 기간에 걸쳐서 정액법이나 생산량비례법 중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상각하여야

41)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 문단 1-2.

42)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가.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internally created intangibles)이 자산의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의 존재 여부와 인식시점을 식별하기 어렵고, 그러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⁴³⁾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비용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자산측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기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무형자산은 분류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회계적, 법률적 및 세무적인 목적에 따라 무형부동산(intangible real property)과 무형동산(intangible personal property)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무형부동산이란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용권, 매도권, 임대차권, 점유권과 같은 권익을 의미하고, 무형동산은 토지나 기타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지 않는 자산으로 물리적 실체를 가지지 않는 각종 증권, 상표권, 저작권, 계약, 허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특허, 프랜차이즈 계약 등을 의미한다.⁴⁴⁾

그러나 무형동산은 개별적인 확인이 어렵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계학적인 자산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회계정보로 공시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⁴⁵⁾ 첫째, 무형자산의

43)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34-38.

44) F. Reilly Robert and Robert P. Schweih, *Valuing Intangible Assets*, Irwin Library of Investment & Finance, McGraw Hill, 1999.

45) 김창수·김지범, “지식자산 측정의 회계학적 방법론의 실증적 비교 분석”, 산업경영

소유주에게 어느 정도 측정할 만한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여야 하고, 둘째, 무형 자산과 연계된 다른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서에서 무형자산 회계기준의 적용범위와 예외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용범위로는 일반적인 무형자산외에 소프트웨어, 광고, 훈련, 사업개시, 연구활동 및 금융리스하의 무형자산까지 포함하고 있다.⁴⁶⁾ 국제회계기준은 무형자산의 종류를 품종명, 마스트헤드와 출판표제, 컴퓨터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특허와 다른 산업재산권, 서비스와 경영권, 요리법 등과 같이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는 (1) 광업권, 광물, 석유, 천연가스 및 기타 재생할 수 없는 자원탐사, 개발 및 추출비용, (2) 보험계약자와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무형자산, (3) 이연법인세자산, (4) 리스(IAS 17호), (5) 종업원혜택으로 발생한 자산(IAS 19호), (6) 기업결합으로 발생한 영업권(IAS 22호), (7) 금융상품(IAS 32호), (8) 기타 다른 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루어지는 무형자산 등이 있다.

미국회계기준 APB Opinion 17은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단지 영업권(goodwill), 특허권(patents), 독점판매권(franchises), 상표권(trademarks) 등의 계정을 예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부담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지식, 새로운 공정이나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 라이선스,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지식과 상표권(상표명 및 출판권 포함) 등의 무형자원을 취득, 개발, 유지 또는 개선한다. 이러한 예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권, 저작권, 영화필름, 거래처목록, 어업권, 수입할당량, 프랜차이즈, 고객 또는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시장점유율과 판매권 등이 있다.⁴⁷⁾

연구 제8권 제2호, 1999, p.181.

46) 국제회계기준서 제38호 문단 7-17.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서에서의 무형자산의 종류를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및 상품명 포함), (2)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3) 저작권, (4) 컴퓨터소프트웨어, (5) 개발비(제조비법, 공식, 모델, 디자인 및 시제품 등의 개발), (6) 임차권리금, (7) 광업권, 어업권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⁴⁸⁾

이하에서는 무형자산의 유형을 대표적인 학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1) Thomas A. Stewart

인적자본(human capital)에는 종업원의 지식, 기술, 혁신성, 능력, 기업의 문화, 기업의 가치 및 철학, 매너 등이 있다. 구조적 자본은 '종업원이 퇴근한 후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조직구조, 특허 및 상표가 이에 속한다. 고객 자본은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 고객만족도, 브랜드 인지도, 상표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구조적자본(structural capital)은 지적능력을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조직구조, 특허권, 상표권 등이 구조적자본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고객자본(customer capital)은 고객과의 관계로부터 창출되는 것으로서 고객만족도, 브랜드인지도, 트레이드마크 등이 있다.⁵⁰⁾

47)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6.

48)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75.

49) 채정병, 전계논문, pp.26-29.

50) Thomas A. Stewart, *ibid*, 1997.

2) Karl Erik Sveiby

무형자산의 구성요소를 종업원의 역량(employee competence), 내부구조(internal structure), 외부구조(external structure)로 분류하고 있으며, 내부구조는 일반적으로 고용자에 의해 창조되고 조직에 의해 소유되는 문화(culture) 또는 정신(spirit)에 대한 것으로 특허, 개념, 모델과 컴퓨터와 행정시스템으로 보고있다. 외부구조는 고객과 공급자와의 관계, 브랜드, 상표, 명성 또는 이미지가 이에 속하는데 내부적 구조자산의 경우만큼 연대가 강하지 않다. 종업원의 역량은 개별적 능력(individual competence)이라고도 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하는 사람의 능력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술, 교육, 경험, 가치와 사회적 기술이 포함된다. 개별적 능력은 그것을 소유한 개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에 의해 소유될 수 없다.⁵¹⁾

3) Annie Brooking

시장자산은 한 조직이 시장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다양한 브랜드, 고객 충실도, 유통 경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인간중심자산은 조직체의 직원에 의해 구현되는 집단적 전문 기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 리더십, 기업 및 경영 기술 등을 의미한다.

지적소유자산은 기업이 많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을 보호하는 것이다. 노하우, 기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이 포함된다. 인프라자산은 조직체가 기능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방법론, 절차로서 기본적으로 조직체의 운영방식을 보충하는 요소이다.⁵²⁾

51) Karl Erik Sveiby, *The New Organizational Wealth: Managing and Measurement Knowledge-Based Assets*, 1995, pp.24-32.

52) Annie Brooking, *Intellectual Capital*,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Company, 1996.

4) Kaplan과 Norton

고객자산은 고객만족도, 고객선호도와 관련된 것으로 고객에 대한 태도, 브랜드, 명성, 이미지 등이며, 내부경영과정에는 기업의 조직지식, 기업문화, 정신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해당된다.⁵³⁾

학습과 성장에 관련된 지식자산에는 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한 종업원들의 학습능력과 노하우, 경험 등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품질은 무형자산 측정의 계기가 되었는데 1960년대 일본에서 통계적 품질관리가 도입되고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업적평가의 척도로서 산업계에 도입되었다. 1990년대에는 무한경쟁과 함께 고객만족이 경영의 핵심이 되었고 업적평가척도로서 고객만족도를 개발하여 고객중심의 경영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⁵⁴⁾ 특히 이들은 재무 및 비재무적인 요소를 하나의 척도로 결합한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card)를 개발하여 기업의 전략적 업적평가 척도로 과거와 미래, 단기와 장기, 재무와 비재무, 선행과 후행의 지표를 균형적으로 결합시킴으로서 기업의 잠재력과 같은 무형자산을 업적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⁵⁵⁾

5) Lief Edvinsson

Lief Edvinsson은 지적자본을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구조적 자본(structural capital)으로 구분했으며 고객자본(customer capital)은 구조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인적자본은 기업의 임직원이 업무 수행을 위해 가지고 있는 지식, 기

53) Kaplan and Norton, *The Balanced Score Card: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1996.

54) G. Thor Carl, "The Evolu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Government," *Journal of Cost Management*, May/June, 2000, p.20.

55) 손병기, "무형자산과 업적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 제17권 제1호, 인제대학교, 2002, p.43.

술, 능력의 결합물이다. 인적자본에는 임직원이 공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철학, 가치관 등 문화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구조적 자본은 고객자본과 조직적 자본(organization capital)으로 나누어지는데, 고객자본에는 기업과 주요 고객과의 관계가 포함되며, 조직 자본에는 기업의 조직시스템, 프로세스, 조직지식이 포함된다. 조직자본은 다시 혁신자본과 프로세스자본으로 세분되고 혁신자본에는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능력이 해당되며 프로세스자본에는 업무제조, 유통프로세스가 해당된다.⁵⁶⁾ 이와 같이 각각의 분류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 분류에 포함된 지식자산의 요소들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6) Ernest and Young consulting

이들은 무형자산을 다음과 같이 (1) Quality of Management : 기업전략의 수행, 기업전략의 품질, 경영경험 수준, 기업비전의 품질,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스타일 (2) Effective of new product development : 연구개발분야 리더십, 신제품 개발 효과성, 개발시간, 신제품 매출기여도 (3) Strength of market position : 혁신성, 시장점유율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홍보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 (4) Strength of corporate culture : 유능한 인재확보, 인적자원의 자질도, 인센티브 성과, 교육학습, 직원이직률, 사회환경정책, 팀활용도 (5) Effectiv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policies : 주주이익과 일치, 성과위주 보상, 직원보상 대 CEO 보상률 (6) Quality of investor communications : 경영신뢰성, 경영정보 접근, 안내, IR에 대한 지식과 경험, 홍보물의 품질 (7) Quality of products and service : 프로세스, 고객인지품질도, 제품 서비스 하자율, 내구성, 품질관리 수상여부, 프로세스 품질 수상여부 (8) Level of customer satisfaction : 고객만족도, 반복판매율, 고객불만수, 고객지원팀의 품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56) Lief Edvinsson and M. Malone, *ibid.*

제3절 무형자산의 가치측정

무형자산의 특성상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식자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보고방법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OECD에서는 「The Knowledge Based Economy」, 「National Innovation Systems」 등 국가에서 지식자본의 창출, 확산, 획득, 활용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⁵⁷⁾ 최근에는 Blue Sky Project를 통하여 국가의 지적자본에 대한 측정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국가의 지적자산을 측정할 수 있는 각종 지표를 개발하여,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에 매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문제는 미래초과이익 흐름의 예측과 관련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학계와 실무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획기적인 측정방법은 개발되지 않고, 특히 회계학적으로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크다.

무형자산의 가치측정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⁵⁸⁾ 첫째, 무형자산의 가치는 지식경영의 궁극적 지표가 된다. 경영자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무형자산을 정확히 측정할 때 그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축적이 가능하다. 둘째, 기업가치의 올바른 평가는 국가경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퇴출, 인수, 합병이 가속되는 가운데 정확한 기업

57) OECD, *Measuring What People Know Human Capital Accounting for the Knowledge Economy*, OECD Paris, 1996.

58) 이춘경·정기호, “Kalman Filter를 이용한 무형자산 가치 측정”, 제2회 지식경영 학술심포지움 논문집, 1998, p.114.

가치 평가에 기초한 기업퇴출이 결정되어야만 국가 전체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경영에 중요한 것은 기업이 지식이라는 새로운 무형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일이다.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는 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현금흐름을 전망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등의 부과, 용자, 담보, 주주간의 분쟁, 상업소송 등에 기업에서의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되었다.⁵⁹⁾

무형자산은 많은 경우에 있어 실물자산과 노동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가치창출시에 유형자산과 상당한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무형자산의 측정과 평가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심할 때 무형자산만의 평가는 불가능하게 된다.⁶⁰⁾

지식을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지식자산을 재무제표에 보고하기 위하여 측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식자산을 측정하여야 기업의 진정한 자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기업의 현재 및 미래의 자산가액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식자산의 측정모형에 대하여는 선행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는데, 이를 선행연구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무적 측정방법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측정모형으로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자산 전체의 시장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접근법이 제시되었다.⁶¹⁾

첫째, 주식의 시가총액과 부채의 공정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재무제표에 인식

59) F. Reilly Robert et. al. *ibid*, p.74.

60) Baruch Lev, *ibid*, 2001, p.19.

61) 한인구·장지인·나인철, “지식자산 개발활동의 측정과 공시”, 연구보고서 제5호, 한국회계연구원, 2000.

한 화폐성 자산, 유형자산 및 일부 비지식 무형자산의 공정가액을 차감하여 측정하는 시장가치접근 법이 있다. 지식자산을 기업의 장부가치와 시장가치간의 차이로 인식하는 Dzinkowsky와 같은 경우 이러한 측정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²⁾

둘째, Ohlson에서 주장하고 있는 초과이익접근법을 들 수 있다. 즉, 이익예측액에서 정상이익(순자산 장부가액에 자기자본비용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초과이익예측액을 구한 후, 이 금액에 자기자본비용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이다.⁶³⁾

그러나 위의 첫째의 접근방법의 경우, 주식의 시세변동이 부단한 경우 어떻게 ‘대표적인’또는 ‘최적의’ 시가를 찾을 것인가, 그리고 부채, 화폐성자산, 유형자산 등의 공정가액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등의 구체적인 측면을 어떻게 정교히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둘째의 접근방법에서도 어떠한 정교히 고려할 것인가에 따라 측정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둘째의 접근방법에서도 어떠한 이익예측액을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자기자본비용을 정교하게 추정할 것인가 등의 측면에서 적용결과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지식자산 전체를 재무적으로 측정하려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또한 부단히 진행되어 지식자산 측정액을 재무보고에 포함시킬 수 있을 때 재무보고의 유용성이 증대될 것이다.

한편 개별 지식자산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시장가치법(market value method)으로서 이것은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

62) R. Dzinkowsky, Mining intellectual capital, Strategic Finance, Vol.81, No.4, 1999, pp.42-46.

63) J. Ohlson, Discussion of Brand Values and Capital Market Valuation,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3, 1998, pp.69-71.

액에 기초하여 지식자산의 가치를 추정 또는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발생 수익의 일정비율로 로열티로 수수하는 공정계약이 존재하는 특허권, 상호,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거래에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다른 지식자산의 측정에 사용할 때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자산과 구별성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과거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측정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또한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도 그 사용지역 또는 판매지역에 따라 가 달리 측정될 것이며 사용자에 따라서도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측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둘째, 이익현금흐름법(income or cash flow projection method)으로서 이 방법은 지식자산의 가치를 당해 자산 미래 경제적 효익, 즉 미래 이익 혹은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내부개발 영업권이나 사용중인 프랜차이즈와 같이 미래 경제적 효익이 당해 지식자산과 결부될 수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한 자산의 경우 시장가치에 의한 평가를 적용할 수 없고 재생산을 위한 대체원가 역시 결정하기 어렵다. 이 방법의 문제점으로는 특정 지식자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효익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 미래 경제적 효익을 추산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경우 과거의 이익/현금흐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및 할인율이나 자기자본 비용의 선정 적정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대체원가법(replacement cost method)이 있는데 이 방법은 그 재생산 EH는 대체에 소요되는 원가추정액으로 지식자산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연구개발과 같이 재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원가법 사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대체원가와 미래 경제적효익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개발이 성공한 지식자산의 원가 속에 개발 중단 또는 실패했던 지식자산의 원가까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있다.

2) 비재무적 측정방법

이상으로 지식자산의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측정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나 아직 회계실무에서는 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공준 및 인식기준의 보수성, 재무보고 범위의 한계와 같은 이유로 모든 지식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지식자산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재무제표 정보만으로는 더 이상 기업의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제4장 K-IFRS 도입과 무형자산 평가

제1절 무형자산에 대한 K-IFRS 규정

K-IFRS에서는 현행 규정의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조건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규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⁴⁾

첫째, K-IFRS 제1038호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 비해 무형자산을 더욱 추상적이고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다른 자산으로 분류되었던 항목들이 무형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이다. 그 결과 대차대조표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항목의 수가 증가하고, 각 무형자산 항목에 대한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등에 대한 추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⁶⁵⁾

둘째, 사업결합시에 ‘기업인수 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의 요구사항과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으로 사업결합에서 취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이 자주 영업권에 포함되었다.⁶⁶⁾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문단 54)에 따르면 영업권은 더 이상 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라 자산손상평가 대상이

64) 한국회계기준원, “현행 한국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가칭)의 주요차이와 영향분석”, 2007, pp.188-193.

65) 한국회계기준원, 상계논문, 2007, pp.188.

66) 한국회계기준원, 상계논문, 2007, pp.190.

됨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을 명확히 식별하지 않을 경우 상각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이 영업권에 포함되어 상각되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K-IFRS 제1038호에서는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업결합 시에 대차대조표에서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하는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의 종류가 증가하고 각 무형자산 항목에 대하여 내용연수, 잔존가치, 상각방법 등에 대한 추정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무형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규정은 다음과 같다. 현행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만 적용하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최초 원가로 인식한 이후에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K-IFRS 제1038호) 단, 무형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활성거래시장(active market)이 존재하여야 한다(문단 72).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활성거래시장을 기초로 하여 무형자산의 재평가지 공정가치를 결정한다고만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정가치 결정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활성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무형자산의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재평가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더 이상 활성거래시장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은 활성거래시장을 기초로 한 최초 평가일의 재평가금액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재평가모형은 자산을 취득원가로 최초에 인식한 후 적용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무형자산이나, 취득원가가 아닌 금액으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을 재평가하는 경우 장부금액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는 유형자산의 경우와 동일하다.

그러나 무형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세무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

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경우 세무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세법상 원가법 평가 하에서는 평가증 및 평가감에 대한 세무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⁶⁷⁾ 기업이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은 2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상각자산은 비상각자산에 비하여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며, 해당자산 분류에 속하는 자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세무조정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예를 들어 건물과 같이 자산분류에 속하는 자산의 개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장치 또는 비품과 같이 자산의 개수가 많은 자산분류보다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함에 있어 세무조정의 부담이 작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세무상 원가법 평가원칙이 유지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평가증이 가능한 자산분류에 대해서만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의 자산재평가법 적용 시와 마찬가지로 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무형자산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법인이 자발적으로 무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특히 개발비의 경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⁶⁸⁾ 또한 법인이 개발비의 요건을 구비한 비용을 무형고정자산이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무형

67) 신현걸·정재연,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09, p.55.

68)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자산으로 보나, 법인에 대해 개발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⁶⁹⁾

이하에서는 무형자산의 적용범위 및 식별가능성과 관련된 K-IFRS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⁷⁰⁾

먼저 K-IFRS에서는 광업권의 경우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1106호)를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할 것을 요구한다. 식별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는 광업권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2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업권의 자산화 가능성은 엄격하게 규정한다. 즉 법인세법은 별도로 무형자산에 대하여 조세부담의 공정성 및 자의적해석의 방지를 위해서 상각자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⁷¹⁾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005. 6. 30. 개정 ; 의장법 시행령 부칙)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05. 2. 19. 개정)

69)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9.

70) 김용석 · 원재훈, 「IFRS 법인세 실무」, 도서출판 원, 2010, pp.105-111.

7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2항.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아.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항공법」 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그리고 비계약적 고객관계에 대하여 K-IFRS에서는 고객관계를 보호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교환하는 거래(사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존재한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열거된 무형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상각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즉 비계약적 고객관계를 K-IFRS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표 1] K-IFRS 도입시 비계약적 고객관계규정 세무조정

최초인식시	감가상각시
(손금산입)무형자산(유보)	(손금산입)무형자산(유보)
주의 : 손금산입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세무상 귀속시기 및 성격을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함.	

또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K-IFRS 규정은 무형자산 인식이 내용연수가 유한인지 무한인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표 2]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무형자산 내용연수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10년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50년	댐사용권

즉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적인 무형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만 수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법에 열거된 자산만 상각하며 그 상각기간도 법정화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상 상각 범위액 내에서 손금 인정한다. 따라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신고조정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손금산입되지 않는다. 이는 일시적 현금지출 법인세 증가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즉시상각의제로 세무상 상각범위액과 비교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무형자산 자산재평가과 관련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K-IFRS 무형자산 자산재평가과 관련 규정

K-IFRS	현행기업회계기준	법인세법
원가모형 및 재평가모형 선택	원가모형만 허용	자산 임의평가 불인정. (인정사유 : 법열거)
평가증:재평가잉여금 평가감:당기손익처리	손상검사에 따라 손상차손인식	손상차손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함 (즉시상각의제)

그리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K-IFRS 규정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 최초인식 후,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세무상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에 한하여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기준내용연수)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에 한하여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K-IFRS 무형자산 손상차손 규정

K-IFRS 회계처리	세무조정
손상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없음 (신고조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지출 법인세 증가하게 됨)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 (차)손상차손 (대)손상차손누계액	손상차손금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하여 세무상 상각범위액과 비료하여 세무조정함

사업결합 등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인식과 관련된 K-IFRS 규정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경우,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인식하지 않았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별도로 인식한다.

이와 관련된 현행 법인세법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K-IFRS 사업결합 등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규정

구분	법인세법
사업결합시 인식한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열거된 무형자산인 경우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함 (익금산입)합병평가차익(기타) 우후 매년 감가상각시 세무상한도 범위액 내에서 손금 인정됨
사업결합시 인식한 무형자산이 법인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무형자산인 경우	(손금산입)무형자산(-유보) (익금산입)합병차익(기타) 추후 관련 자산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함

그리고 사업결합(지분통합법의 폐지)와 관련된 K-IFRS 규정은 “사업결합”은 모든 사업결합을 매수법에 의해 회계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⁷²⁾

즉 K-IFRS 규정 상 사업결합 회계처리는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위한 필수조건인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의 장부가액 승계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현행 법인세법하에서는 K-IFRS도입 후 세무상 합병으로 인한 이월결손금 승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으로 유입될

72)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것이 확실하고, 그 자산의 취득원가가 신뢰할 수 있게 측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은 개별취득, 기업결합으로 일부 취득, 정부교부방식에 의한 취득, 자산의 교환,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등 형태별로 인식과 초기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개별취득시에는 취득원가로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으로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서 제22호를 적용하여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정부교부방식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서 제20호를 적용하여 취득시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거나, 명목금액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종자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받은 자산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유사자산과의 교환인 경우에는 제공된 자산의 장부가격으로 인식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무형자산의 인식에 대하여 현재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하고, (2) 자산의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⁷³⁾ 또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존재할 경제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에 근거하여야 하고,⁷⁴⁾ 미래 경제적 효익의 확실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서 입수가 가능한 증거에 근거하며, 외부 증거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며,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여야 한다.⁷⁵⁾

73)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16.

74)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17.

75)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문단 19.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준 내에서 인식과 형태별 취득에 따른 최초평가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한 반면⁷⁶⁾, 기업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은 이러한 기준 내용이 전무하다. 단지 일부 기준에 대해 전체 자산에 적용되는 일반 자산평가기준에서 개별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먼저 기업회계에서는 무형자산의 경우 무형자산의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직접 관련이된 지출로 구성되는 취득원가로 측정된다. 매수기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 준칙에 따라 매수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경우 그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 제조 사용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인건비, 감가상각비, 법적 비용 등의 간접 지출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미래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한 지출이라도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개시비용, 교육훈련비, 광고 및 판매촉진비, 사업이전비 등의 지출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과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나 증간 재무제표에서 일단 비용으로 인식한 지출은 그 후 기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76) 국제회계기준서 38호.

제2절 국제이전가격과세제도

무형자산과 국제조세가 관련된 주요 문제 중 하나로는 국제이전거래(transfer pricing)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들 수 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이전가격의 결정에 대한 규제와 조세피난처(tax haven)에 관련한 규제 등이 주된 주제이다.⁷⁷⁾

이러한 이전가격 관련 거래내용이 최근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의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형자산 거래와 관련된 이전가격 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무형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하는가 문제이다. 정상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인 되는 거래가 존재해야 하고, 그러한 비교대상 거래와 특수관계 거래와 존재하는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정상가격을 구할 수 있다.⁷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경우에 과세당국은 해당 국제거래에 있어서 기업의 조세회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인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써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전가격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

3) 노현섭, 「세무학연구방법론 : 국제조세의 사례분석과 연구방향」, 세학사, 2000, pp. 395-423.

78) E. Lebowits Brian., *Transfer Pricing and the End of International Taxation*, Tax Notes, Sept 13, 1999, p.1523.

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형자산거래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1. OECD의 이전가격 과세

1975년 OECD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 「Transfer Pric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에서는 각국의 이전가격체제의 변화를 내용으로 기술하고,⁷⁹⁾ 1984년에는 「이전가격조작 대응 조정 및 상호합의절차」라는 보고서에서 1979년에 발표한 내용을 수정하였다.⁸⁰⁾ 그러나 OECD에서 1979년과 1984년에 발표한 보고서들은 대부분 시기적절하지 못하고 그 당시의 조세환경에 맞지 않아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⁸¹⁾

그 후 1994년 이전가격보고서 초안 제1부를 발표하여 정상가격원칙의 준수를 강조하고 거래접근법의 비교가능성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소득접근법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⁸²⁾

OECD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형자산의 정상 가격결정시 고려할 요소는 무형자산의 기대수익 결정, 사용지역 범위, 수출제한, 이전권리의 배타적 사용여부, 설비 등 자본투자 수반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거래당시 무형자산의 가치가

79) OECD, *Transfer Pric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Report of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1979.

80) OECD, *Transfer Pricing Corresponding Adjustment and their Mutual Agreement Procedure*, Paris, 1984.

81) G. Maisto, "Transfer Pricing in the Absence of Comparable Market Price", IFA, Netherland, 1992, p.2.

82)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 OECD, 1994.

불확실하고 비교가능성이 없어 정상가격결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유사상황에서 독립기업이 취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교가능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인지도, 시장점유율, 판매량 등을 고려하여 제3자 가격비교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고가의 무형자산 또는 유일한 재화에 대하여 비교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때에는 이익분할법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정상가격 결정시 무형재화 또는 유일한 재화에 대하여 비교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때에는 이익분할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미국 내국세입법

미국 「내국세입법」상 이전가격의 과세규정은 제482조이다. 이 규정은 미국의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무형자산의 이전거래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과세원칙인 소득상응의 원칙(commensurate with income standard)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특수관계 기업 사이에 무형자산이 이전되는 거래에서 납세자는 동 거래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당해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1968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이에 더하여 무형자산의 이전거래에서의 거래가격이 당해 무형자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바, 이를 소득상응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 원칙은 1986년도의 「조세개혁법」에 의한 제482조 규정 재정 당시에 신설되었다.⁸³⁾

그리고 이 규정에 의한 이전가격 과세의 적용대상인 무형자산은 「내국세입법」 제936조(h)(3)(b)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무형자산은 개인의 인적용역과 독립되어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1) 특허, 발명, 공식, 공정, 설계, 모형 또는 노하우, (2) 저작권, 문학, 음악 및 예술작품, (3) 상표, 상호,

83) Tax Reform Act §1231 (e)(1)

(4) 독점, 면허, 계약, (5) 방법, 프로그램, 시스템, 절차, 캠페인, 조사, 연구, 예측, 추정, 고객명단, 기술자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88년 이전가격 백서에서는 소득상응의 원칙 아래 무형재화의 정당한 대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격접근방법(pricing approach)과 소득접근방법(income approach)을 제시하였다. 가격접근방법에는 다시 진정 비교가능방법과 불진정 비교가능방법으로 구분하였고 소득접근방법은 기본정상자산 수익률법과 기본정상 자산수익률법에 이익배분법을 병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⁸⁴⁾

그리고 1994년 「내국세입법」 규정에 의하면 이전가격결정 방법간의 적용상 우선순위를 두고 상위방법을 적용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 그리고 제4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관계자간의 정상대가 결과는 거래와 관련된 여러 상황 및 여건에 따라서 정상대가 결과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규정의 변경은 납세자에게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신축성을 부여하는 것이며 자신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최적방법임을 거래 당시의 자료를 기초로 입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종전의 규정보다 세련된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⁸⁵⁾

또한 납세자와 과세당국간에 이전가격과세문제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시 조정할 수 있는 이전가격 사전협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관계 기업에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

84) 장덕열, 「다국적기업과 조세전략」, 조세통람사, 1993, p.2.

85) 김주택,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제11권 1998, p.331.

한 거래조건에서 거래하였다면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국제이전가격과세제도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 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⁸⁶⁾ 이전가격과세는 통상적인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pin point price)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격을 입증한다는 것은 과세당국이나 납세자 모두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가격의 결정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전통적인 거래가격 방법인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재판매가격법, 원가가산법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⁷⁾

(2) 둘째, 거래가격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에는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 그리고 기타 합리적인 방법의 순서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⁸⁾

8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

8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3) 셋째,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들은 거래가격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들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법

이 방법은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⁸⁹⁾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적용시에는 제품의 동일성(품목, 규격, 사양, 수량), 거래시기의 동일성(계절별 영향에 따른 가격차이), 거래시장의 동일성(시장수준, 지리적 동일성), 거래조건(대금지급조건, 운송조건, 할인정책)과 같은 요소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방법이다.

2) 재판매가격법

이 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 한 후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구매자의 통상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⁹⁰⁾ 재판매가격법은 구입재화에 대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이를 단순히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합리적인 가격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매가격법을 용역거래 및 기타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⁹¹⁾ 그러나 무형자산의 경우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9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9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재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원가가산법

이 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원가가산법은 비교가 되는 두 기업의 적정 원가가산율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나 무형자산의 경우 소요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개발된 무형자산의 비용인식에 따른 기간배분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동 특수관계 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 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⁹²⁾

이 방법은 반제품이 특수관계기업간에 거래되거나 특수관계기업들이 공동설비계약(joint facility agreements) 또는 장기구매 공급약정(long term buy-and-supply arrangements)을 맺거나, 특수관계거래가 용역의 공급인 경우 아주 유용하다.

4) 이익분할법

이 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

9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의하여 배부하고 이처럼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⁹³⁾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을 토대로 측정한다. 따라서 이익분할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무상 지표는 자산이익율, 인건비대 이익율 등 거래에 관련된 기업의 영업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동 방법은 비교가능한 거래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며, 따라서 독립기업간 유사거래를 찾기 힘든 경우에 사용될 수 있고, 독립기업으로부터의 외부자료는 직접적으로 이익분할을 하기 위해서보다는 주로 특수관계 기업들의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공헌도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이익분할법은 독립기업들이 같은 여건에 처했을 때 취하리라고 생각되는 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독립기업원칙을 따르는 한편, 독립기업들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관계 기업간 특별사항과 여건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특수관계 기업들의 거래상 기여도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외부시장 자료들의 거래관련성이 다른 방법들에 비해 떨어지고, 이익분할법 적용시 사용되는 외부시장 자료의 거래관련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분할의 주관성은 더욱 높아진다는 점이다. 또한 이익분할법이 영업이익에 적용된 경우 거래관련 적정영업비용을 확정하여 그 비용을 당해거래와 특수관계 기업들의 여타 거래사이에 배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익분할법에는 비교이익분할법, 잔여이익분할법 등이 있다.

5) 거래순이익률법

이 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

9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 없는 자와의 거래 중 다음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⁹⁴⁾

- (1) 거래순이익률의 매출에 대한 비율
- (2)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3)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 (4)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9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

제3절 K-IFRS 도입에 따른 개편방안

무형자산과 관련된 K-IFRS 도입과 관련된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K-IFRS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의 인식 및 평가과정에서의 오류가 향후 이익의 변동성을 상당히 증대시키고 공정가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무형자산의 일부 항목들은 엄격한 인식조건을 부분적으로는 충족시키지만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 중에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정고객(customer), 고객충성도(customer loyalty), 시장점유율(market share) 등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통제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연구비의 경우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측정가능성은 높지만 미래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발생한 기간의 기간비용으로 인식하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교육훈련비, 마케팅비용 등도 측정가능성은 충분하고 미래경제적 효익도 기대되지만 통제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창업비와 개업비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증가와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무제표에의 무형자산의 미기재는 재무제표의 유용성 저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자산 투자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양한 연구 연구자들에 의해 무형자산을 재무보고의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측정 및 공시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⁹⁵⁾ 또한 현재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못하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측정치를 개발, 운용하자는 제안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다.⁹⁶⁾ 이러한 비재무적 측정치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하여 그간 선도기업들이 실험적으로 도입하였던 실무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실무에서 도입한 지식자산 측정모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이전가격과세제도와 관련된 K-IFRS 도입과 관련된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독립기업간의 거래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를 유사한 상황에서 비교가능성이 있는 여러 지표를 사용하여 결정하게 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활동의 기능, 계약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재화나 용역의 종류와 특성, 시장여건의 변화, 경제여건 등의 요소를 들고 있다.⁹⁷⁾ 그러나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도록 업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다 자세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에 비하여 그 가치를 계량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회사간에 이전가격의 조작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형자산의 범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

95) B. Lev and P. Zarowin, The boundari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how to extend the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99, pp.353-385.

96) Lev, Baruch, *Intangibles: Management, Measurement, and Reporting*,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9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와 조세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대가의 결정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의 이전 시 사용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자산은 그 재화의 속성상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과세권의 확보가 어려우며 나아가서 조세의 회피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제화에 대비하여 무형자산의 정상대가결정방법을 유형자산과 구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납세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제3자 거래기준가격과 차이가 있더라도 적절한 가격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실지거래가 계약조건과 동일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론

지식기반경제 구조 하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주요한 미래 수익 창출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에 관한 회계정보가 기업가치 평가에 목적적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강조한 엄격한 회계기준으로 인해 무형자산 투자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K-IFRS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 관련 규정의 개편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형자산의 일부 항목들은 엄격한 인식조건을 부분적으로는 충족시키지만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통제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증가와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무제표에의 무형자산의 미기재는 재무제표의 유용성 저하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식자산 투자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못하는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측정치를 개발, 운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재무적 측정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즉, 실무적 차원의 무형자산 측정모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세제는 현재 국제거래에서 무형자산의 거래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고, 무형자산의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많은 문

제점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첫째, 무형자산거래와 관련된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가능성 지표를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이 되지 않도록 업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다 자세한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2) 둘째, 납세자의 특수사항을 고려하기 위해서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의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해당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실지거래가 계약조건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셋째, 무형자산은 그 재화의 속성상 유형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과세권의 확보가 어려우며 나아가서 조세의 회피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제화에 대비하여 무형자산의 정상대가결정방법을 유형자산과 구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석웅 · 김정교 · 윤상봉 역, 「무형자산 관리, 측정, 보고」, 신영사, 2002.

김용석 · 원재훈, 「IFRS 법인세 실무」, 도서출판 원, 2010.

김주택,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제11권, 1998.

김창수 · 김지범, “지식자산 측정의 회계학적 방법론의 실증적 비교분석”, 산업경영연구 제8권 제2호, 1999.

노현섭, “국제조세의 사례분석과 연구방향”, 「세무학연구방법론」, 세학사, 2000.

박성섭, “지식경영의 경영성과 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서지성, “무형자산성 지출의 회계처리방법에 따른 기업가치관련성”, 국제회계연구 제24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08.

성웅현 · 조경선, “지식재산 투자와 관리가 기업의 무형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제12권 제2호,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손병기, “무형자산과 업적평가척도에 관한 연구”, 인제논총 제17권 제1호, 인제대학교, 2002.

송경근·성시중, “가치실현을 통한 통합경영지표 BSC”, 한국언론자료발간회, 1998.

신일순·김홍균·송재경, “정보기술 이용과 기업성과”, 경제학연구 제46집 제3호, 1998.

신현걸·정재연, “국제회계기준의 공정가치 평가가 세무조정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한국세무학회, 2009.

오용진·김은혜, “IFRS도입에 따른 사업결합과정의 무형자산 평가 사례를 통한 이익 변동성 검토 - 국내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국제회계연구 제32집,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안정근, “무형자산과 지적 재산권의 평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0권 제2호, 1998.

오준환, “성과선도모형을 이용한 지식자산가치의 측정 및 평가” 회계학연구 제28권 제3호, 2003.

우성진, “지식경영의 핵심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이건창, “국내산업별 지식경영 전략 프레임워크에 관한 연구”, 제3회 지식경영 학술심포지움, 1999.

이준환, “무형자산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미국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춘경 · 정기호, “Kalman Filter를 이용한 무형자산 가치 측정”, 제2회 지식경영 학술 심포지움 논문집, 1998.

장덕열, 「다국적기업과 조세전략」, 조세통람사, 1993.

정건영 · 조성표, “자산 및 부채기준 평가기준 개선방안,” 회계저널, 한국회계학회, 1995. 12.

정재일, “지식자산의 측정 · 공시에 대한 집단특성별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조성표, “무형자산 회계기준서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연구원, 2000.

조용언 · 이정란, “K-IFRS 채택이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 회계저널 제10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9.

조항춘,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고찰”, 월간 공인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2004. 12.

조호석, “지식자산의 가치측정과 보고”,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채정병, “무형자산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최정호, “광고비 및 연구개발비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토빈 q에 의한 실증적 분석”, 회계학연구, 한국회계학회, 1994.

한인구 · 장지인 · 나인철, “지식자산 개발활동의 측정과 공시”, 한국회계연구원 연구보고서 제5호, 2000.

홍정화, “지식자산의 측정과 보고에 관한 연구”, 재무와 회계정보 저널 제3권 제2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03.

홍정화 · 유영경, “지식자산연구의 동향과 향후 과제”, 세무와 회계저널 제5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4.

한국회계기준원, 현행 한국기업회계기준과 한국-국제회계기준(가칭)의 주요차이와 영향분석, 2007, pp.188-193.

2. 국외문헌

Amir, E. and Lev, Baruch, “Value-relevance of Earnings and Book Valu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996.

Anderson, Arthur, *The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Anderson, H. and Prezas, A., “Intangible Investment, Debt Financing and
Managerial Incentives,”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1999.

Brian E. Lebowits, *Transfer Pricing and the End of International Taxation*, Tax
Notes, Sept 13, 1999.

Bierman, H. and Dukes R. E., “Accounting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Journal of Accountancy*, Vol.139, No.4, April 1975.

Brockington, Raymond, *Accounting for Intangible Assets: New Perspective on
the True and Fair View*, Addison Wesley, 1996.

Brooking, Anny, *Intellectual Capital*, International Thomson Publishing Company,
1996.

Carl G. Thor, “The Evolu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Government,”
Journal of Cost Management, May/June, 2000.

Chauvin, K. W. & M. Hirschey, Advertising, R&D Expenditures and the Market Value of the Firm, *Financial Management* Winter, 1993.

Choi, W., Kwon, S. and Lobo, J., "Market 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Working Paper*, 1998.

Davenport, T. H., "Improving Knowledge Work Process," Sloan Management Review, Summer, 1996.

DeSouza, Glenn, "Royalty Methods for Intellectual Property," *Business Economics* 32(2), 1997.

Dion, Kathleen R, "Measuring Intangible Assets: The Internal Perspective", *Journal of Cost Management*, May/June, 2000.

Dzinkowsky, R., Mining intellectual capital, *Strategic Finance*, Vol.81, No.4, 1999.

Edvinsson, Leif, and Malone, M, *Intellectual Capital: Realizing Your Company's True Value by Finding Its Hidden Roots*, Collin Publisher, 1997.

Ely, K and Waymire, G, "Intangible Assets and Stock Price in the Pre-SEC Ear,"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37, 1999.

Epstein, Barry J. & Abbas Ali Mirza,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Wiley, 1999.

Gordon V. Smith and Russell L. Parr, *Intellectual Property: Licensing and Joint Venture Profit Strategies*, John Wiley & Sons, 1993.

Grant, R. M., "Toward a knowle-based Theory of the Firm", *Strategic Management Review*, Vol.17, 1996.

Gordon V. Smith and Russell L. Parr,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 2ed ed., John Wiley & Sons, 1994.

Hansen, M., "What's Your Strategy for Managing Knowledge?", *Ha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1999.

Hodgson, J. and Willet, R., "Accounting for Intangibles: A Theoretical Perspective,"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23, 1993.

Kallapur, S. and Kwan, S., "The Value Relevance or Brand Assets Recognized by UK Firms," *Working Paper*, January, 2000.

Kaplan and Norton, *The Balanced Score Card: Translating Strategy into Action*, 1996.

Karl Erik Sveiby, *The New Organizational Wealth: Managing and Measurement Knowledge-Based Assets*, 1995.

Kathleen R. Dion, "Measuring Intangible Assets: The Internal Perspective", *Journal*

of Cost Management, May/June, 2000.

Klock, M. and Megna, P., “Measuring and Valuing Intangible Capital in the Wireless Communications Industry,”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Vol.40, 2000.

Lebowits, Brian E., *Transfer Pricing and the End of International Taxation*, Tax Notes, Sept 13, 1999.

Lev, Baruch, *Intangibles: Management, Measurement, and Reporting*,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1.

Lev, Baruch, and Zarowin, Paul, “The Boundari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How to Extend Them,” Working Paper, New York University, 1999.

Lev, Baruch, and Zarowin, Paul, The boundari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how to extend the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Autumn, 1999.

Mason, R. M., “Effective Intelligent Organization: Knowledge is not Enough Implications for Information Systems Planning”, HICSS 92, 4., 1992.

Maisto, G., “Transfer Pricing in the Absence of Comparable Market Price”, IFA, Netherland, 1992.

Nonaka, I. and Takeuchi, H., *The Knowledge-Creation Company: How Japaness*

- Companies Create the Dynamics of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Ohlson, J., Discussion of Brand Values and Capital Market Valuation, “*Review of Accounting Studies*, Vol.3, 1998.
- O’Leary, D. E., “Enterprise Knowledge Management”, *IEEE Computer*, March, 1998.
- Peles, Y., “Amortization of Advertising Expenditure in the Financial Statemen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1979.
- Penman, S. and Sougiannis, T., A Comparison of Dividend, Cash Flow, and Earnings Approaches to Equity Valu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998.
- Poter, M. E., *Competitive Strategy*, N/Y: The Free Press, 1985.
- Reilly, Robert F. et. al., “Valuation of Intangible Contract Rights,” *CPA Journal* 67(6), 1997.
- Reilly, Robert F. and Robert P. Schweihs, *Valuing Intangible Assets*, Irwin Library of Investment & Finance, McGraw Hill, 1999.
- Reilly, Robert F. and Schweihs, Robert P, *Valuing Intangible Assets*, Irwin

- Library of Investment & Finance, McGraw Hill, 1999.
- Ruggles, R., "The State of the Norton: Knowledge Management in Practic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0, Spring, 1998.
- Sanchez R. and Mahoney, J. T., "Modularity, Flexibility and Knowledge Management in Product and Organization Design,"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996.
- Shaman, Paul, "Cost and Performance Management in the Age of Global Change," *Journal of Cost Management*, September/October, 2000.
- Simon, C. J. and Sullivan, M. W., "The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Brand Equity: A Financial Approach," *Marketing Science*, Winter, 1993.
- Smith, Gordon V. and Parr, Russell L.,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2ed ed., John Wiley & Sons, 1994.
- Stewart, Thomas A, *Intellectual Capital: The New Wealth of Organizations*, Doublebay, New York, 1997.
- Sveiby, Karl Erik, *The New Organizational Wealth: Managing & Measuring Knowledge-Based Assets*, Berrett Koehler, 1997.
- Thomas A. Stewart, *Intellectual Capital: The New Wealth of Organization*

Doublebay, New York, 1997.

Thomas P. Fitch, *Dictionary of Banking Terms*, 2nd ed., Barrons, 1993.

Thor, Carl G, “The Evolution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 Government,”
Journal of Cost Management, May/June, 2000.

Accounting Principle Board, Opinions No. 17 “Intangible Assets,” August, 1970.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ccounting Trends Techniques*,
1998.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s response to the Exposure Drafts of
IAS Intangible Assets (E60), and, Business Combinations (E61),
November, 1997.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Exposure Draft of a Proposed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usiness Combinations and Intangible
Assets,” September, 1999.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usiness Combinations, 1998.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Exposure Draft E60: Propose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Intangible Assets, November, 1997.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38 Intangible Assets*, September, 1998.

OECD, *Transfer Pricing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Report of the OECD Committee on Fiscal Affairs, 1979.

OECD, *Transfer Pricing Corresponding Adjustment and their Mutual Agreement Procedure*, OECD Paris, 1984.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 OECD, 1994.

OECD, *Measuring What People Know Human Capital Accounting for the Knowledge Economy*, OECD Paris, 1996.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과	회계학과	학번	20097019	과정	석사
성명	한글 : 성경선 한문 : 成旻鮮 영문 : Seong Kyung-Seon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3동 368-181번지				
연락처	E-MAIL : kssung95@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 국제회계기준도입이 법인세법상 자산평가에 미치는 영향 영문 : The Effect of Adoption of K-IFRS on the Evaluation of Intangible Assets in the Corporate Taxa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2011년 2월 일

저작자 : 성 경 선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